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KB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3년 02월 1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02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종류(클래스)	A 클래스	C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9768	69903	99555	99556	99557	9955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금액 미달시에는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종류(클래스)	A 클래스	C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9768	69903	99555	99556	99557	9955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07.06.0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
2007.06.05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
2007.11.16	환매수수료 징구기간 변경(2년 → 1년)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투자신탁명칭을 ‘KB 베트남 포커스 혼합투자신탁’에서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변경
2010.0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2010.05.03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1.01.17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2013.02.1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임광택 → 강성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및 위탁 내용]

구 분	내 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해외위탁집합업자의 개요]

구 분	내 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
회사 주소	60B Orchard Road #06-18 Tower 2, The Atrium@Orchard, Singapore 238891 전화번호: 65-6828-6828 홈페이지: www.fullertonfund.com
회사 개황	주요 주주: 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100% 최초 설립일: 2003-12-11 총수탁고: 약 99억 SG달러 (2012-03-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13년 02월 13일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강성호	1972년	책임	22개	2,944억	동양증권 금융상품운용팀 7개월 동부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3개월 ING자산운용 전략운용분부 1년 10개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투자팀 4년 6개월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증권실 2년 1개월 KB자산운용 해외운용본부 1년 2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13년 02월 13일 기준)

성명	운용기간	비고
임광택	2007.06.01~2013.02.17	해외운용본부
강성호	2013.02.18~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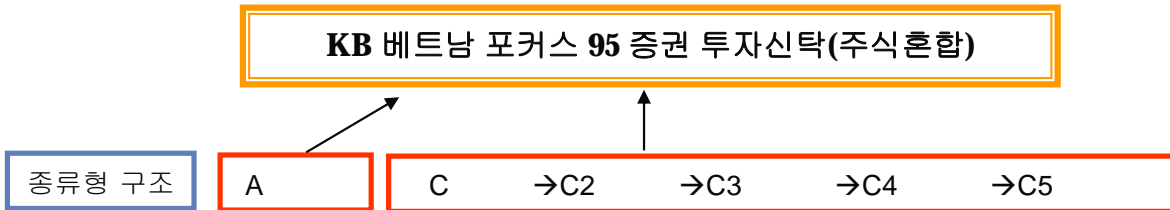
다. 해외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자산운용은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가 담당합니다. 운용은 아시아 팀에서 팀운용으로 이루어지며 책임투자운용인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Teo Joo Wah	4.6억 SG달러 (12.03.31 기준)	현재 FFMC, 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Equities - 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Fund Management Division - DBS Bank, Corporate Banking Department - BB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총 경력: 21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유형	가입자격	구분	부과 비율	
A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9768	
		최초 설정일	2007.06.0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0475%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0000%	
C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9903	
		최초 설정일	2007.06.05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4525%	

C2 클래스	C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9555
		최초 설정일		2011.01.17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3525%		
C3 클래스	C2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9556
		최초 설정일		2011.01.17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2525%		
C4 클래스	C3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9557
		최초 설정일		2011.01.17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1525%		
C5 클래스	C4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9558
		최초 설정일		2012.05.09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 보수 (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0.8775%
			판매회사보수	1.1000%
			신탁회사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총 보수		2.052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베트남 관련 해외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베트남주식시장의 상장주식 및 IPO확정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시장에의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해외주식	95%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베트남 주식시장의 상장된 지분증권 및 상장이 승인된 지분증권[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과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하나 다른 인도차이나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증권에 한한다)
②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식·채권 및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 및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다만,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주식·채권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다만,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법 시행령 제2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신탁계약서 제4조의4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p>※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 가.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로부터 3월간
- 나.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 다.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집합투자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③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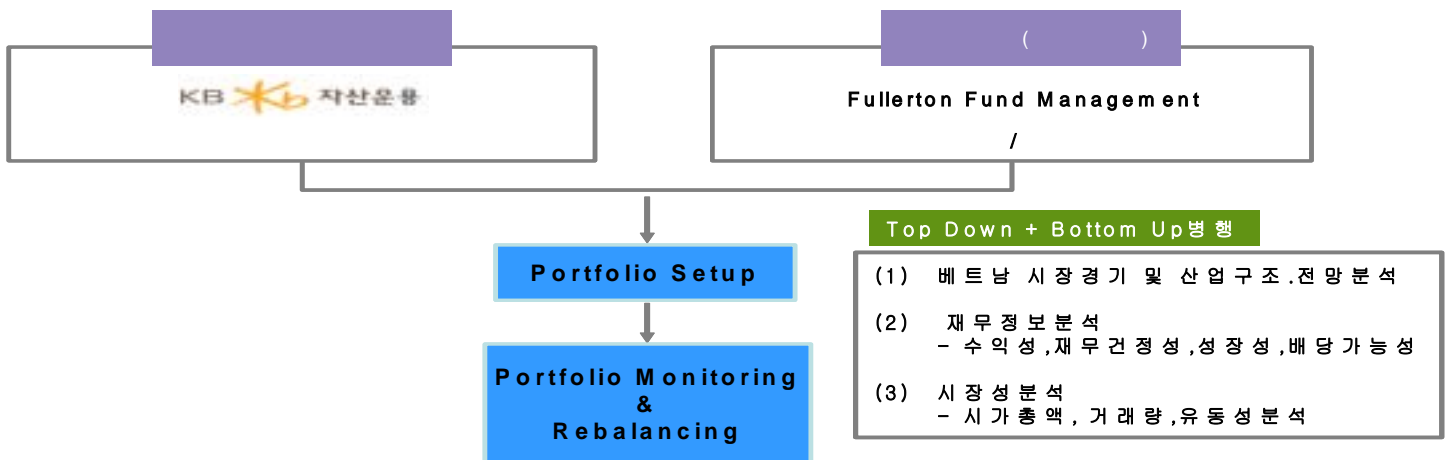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②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③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④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적용의 유예	집합투자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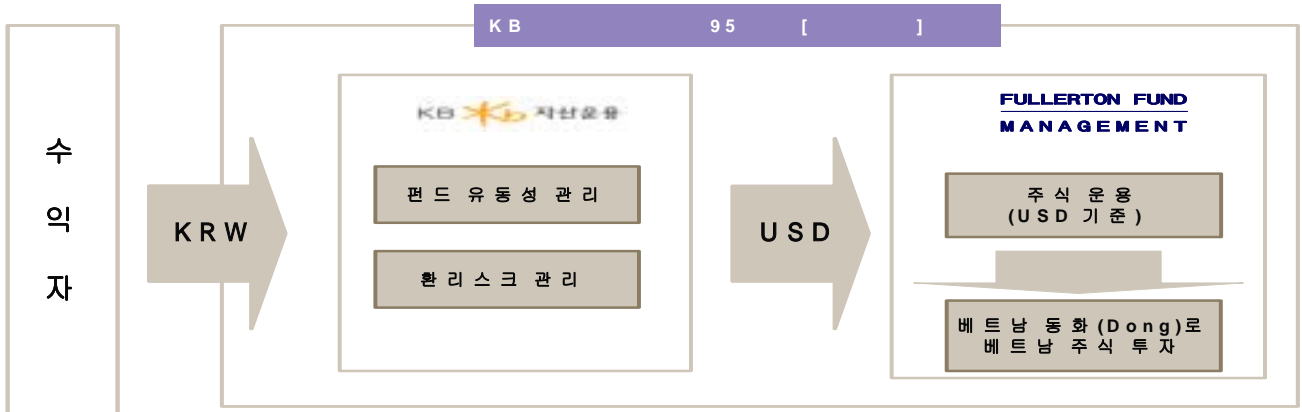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프로세스



(2) 운용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화와 USD간의 환율변동에 대하여 헤지하며, 베트남 동(Dong)화와 USD간에는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략

1) 투자전략

(가) 주식운용전략

가. 설정초기에는 베트남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30%수준으로 편입할 예정이며, 이후 베트남정부의 민영화 계획 진행에 맞춰 IPO확정주식 및 상장주식 위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설정 후 1년 이내에 베트남 및 베트남 관련 주식을 50%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며, 이후 장기적으로 베트남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주식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채권 및 유동성 운용전략: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일상적인 환매에 대비하여 최소 20%내외를 국내채권 및 현금유동성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산업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 (가) 시장 지배력 있는 독과점 기업
- (나) 전력, 통신, 에너지 등의 기간산업
- (다) 유틸리티와 같은 안정성 위주의 산업
- (라) 건설, 무역, 섬유, 수출관련주와 같은 성장산업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투자 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 실행으로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베트남 주식시장의 이해

▪ 개요: 베트남에는 두 개의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식시장은 2000년에 설립된 호치민 거래소로 상장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800억동 이상인 대형종목 위주의 시장이며, 2010년 말 현재 27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식시장은 2005년 03월에 하노이에 설립된 하노이 거래소로 현재 363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10년 말 현재 370억달러 수준으로 2005년 말(5억 6천 5백만달러) 대비 약 6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Nam Viet Bank, Military Bank와 같은 대형종목들이 IPO등록을 위해 대기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영업일 동안 개장하며, 베트남의 국경일과 기타 공휴일에는 휴장합니다. 베트남 주식은 베트남 통화인 동(dong)화로 거래되며, 거래주식의 결제주기는 T+3일이며, 개별주식의 액면가는 10,000동입니다.

▪ 투자위험: 베트남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두시간 동안 세차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주가 상하한 폭이 5%로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개별주식 보유지분한도는 49%(금융주는 30%)로 제한되어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함께 자본시장이 불투명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방의 노력으로 최근 WTO가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 있으며, 정부주도 하에 개방경제로 진행 중에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료주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주식시장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가총액(USD Million)	565	16,000	31,100	12,850	33,577	36,980
상장주식수	33	195	233	333	443	634
VN-Index	307.5	751.77	927.02	315.62	494.77	484.66

<베트남 거래소 트레이딩 시간>

오전 9시	개장
오전 9시 ~ 오전 9시 20분	첫번째 주문
오전 9시 20분	주문 매칭
오전 9시 20분 ~ 오전 10시	Time Break
오전 10시 ~ 오전 10시 30분	두번째 주문
오전 10시 30분	주문 매칭
오전 10시 30분 ~ 오전 11시	대규모 거래 기간
오전 11시	폐장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주식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생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선물, 선물환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통화선물을 활용할 경우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국가위험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개발도상국 특유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로 인해 계획했던 자산배분이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이 강화될 위험과 조세제도의 변화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공시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주요 투자국가 중의 하나인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 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산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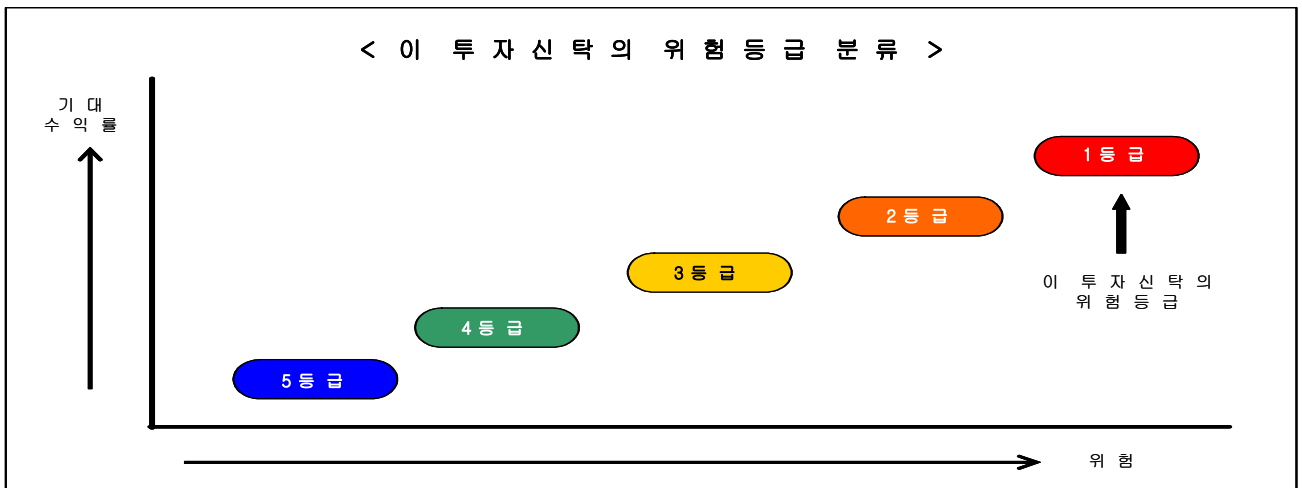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 관련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주식 하락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KB자산운용(주)은 투자위험 등급을 5개의 등급(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로 나눕니다.

위험분류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기등급채권(BB+이하)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의 50% 이상이 환위험에 노출된 집합투자기구 원금손실가능성이 주식형과 비슷한 구조의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예, 인덱스펀드, 원금의 30% 이상 손실이 가능한 구조의 구조화 상품)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국외 대체투자사업(파생상품 제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주식에 40% 이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원금손실이 원금의 최대 10% 이상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구조화 상품 일반적인 대체투자사업(파생상품 제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보다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적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을 감수할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주식에 40% 미만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적격 등급이지만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BBB등급의 회사채 또는 A3등급의 기업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회사채 등급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인 회사나 단체의 신용보강이 있는 대체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국외 대체투자사업은 회사채 등급 A-이상인 회사나 단체의 신용보강 및 담보가 있는 경우, 예)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출자나 대출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원금손실이 원금의 최대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구조화 상품 오피스건물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장기채권 위주 또는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여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듀레이션이 3년 이상인 장기국공채형 집합투자기구 회사채 A-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집합투자기구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원금보장추구형이지만 원금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대체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사업자귀책사유 이외의 협약해지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채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단기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여 매우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목적의 집합투자기구 ▪ 단기국공채형 집합투자기구 또는 MMF ▪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 중에서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이 집합투자기구의 원금손실에 영향이 적은 집합투자기구
------------	----------	---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편입된 자산의 신용리스크에 따라서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T)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1%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 유형	가입자격	구분		부과 비율
A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000%
C 클래스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4525%
C2 클래스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3525%
C3 클래스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2525%
C4 클래스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1525%
C5 클래스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1년 이상 보유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 총보수(연간)		2.0525%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5영업일(T+4)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T+7)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6영업일(T+5)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T+8)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T)	제5영업일(T+4)	제6영업일(T+5)	제8영업일(T+7)	제9영업일(T+8)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환매수수료

1) 1년 미만: 이익금의 70%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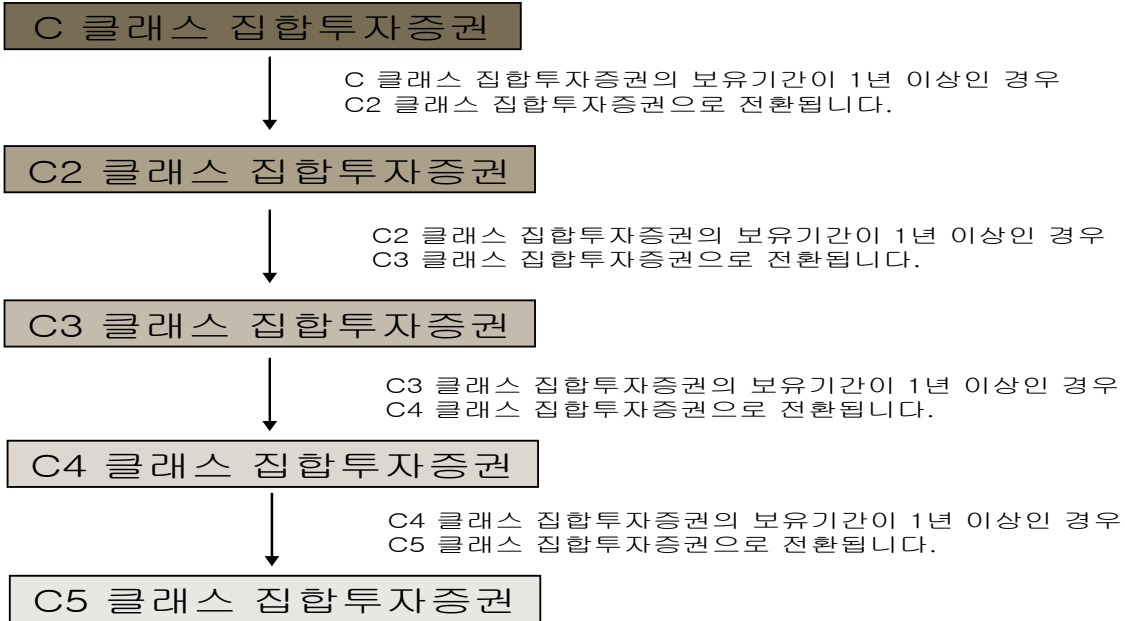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

(1)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전환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2011년 0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클래스별 집합투자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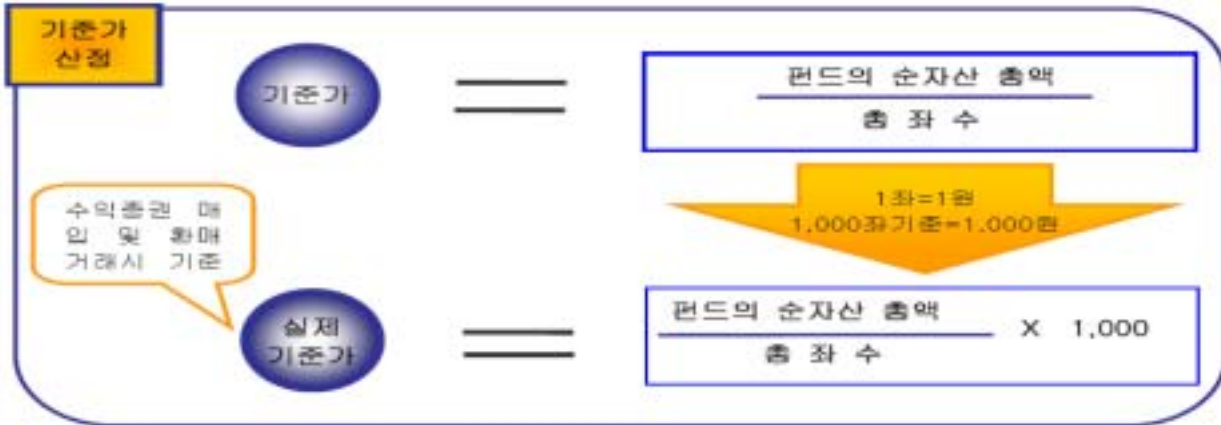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A 클래스	C/C2/C3/C4/C5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1년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A/C/C2/C3/C4/C5 클래스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8775%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아래 표 참조	
신탁업자보수	연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0%	
투자신탁보수 합계	아래 표 참조	
기타비용	아래 표 참조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비율	아래 표 참조	
증권 거래비용	아래 표 참조	

<표>

	A 클래스	C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판매회사보수	연 1.0475%	연 1.5000%	연 1.4000%	연 1.3000%	연 1.2000%	연 1.1000%
투자신탁보수 합계	연 2.0000%	연 2.4525%	연 2.3525%	연 2.2525%	연 2.1525%	연 2.0525%
기타비용	연 0.1638%	연 0.1639%	연 0.1640%	연 0.1643%	연 0.1698%	연 0.1391%
총 보수·비용비율	연 2.1638%	연 2.6164%	연 2.5165%	연 2.4168%	연 2.3223%	연 2.1916%
증권 거래비용	연 0.2151%	연 0.2171%	연 0.2122%	연 0.2030%	연 0.2202%	연 0.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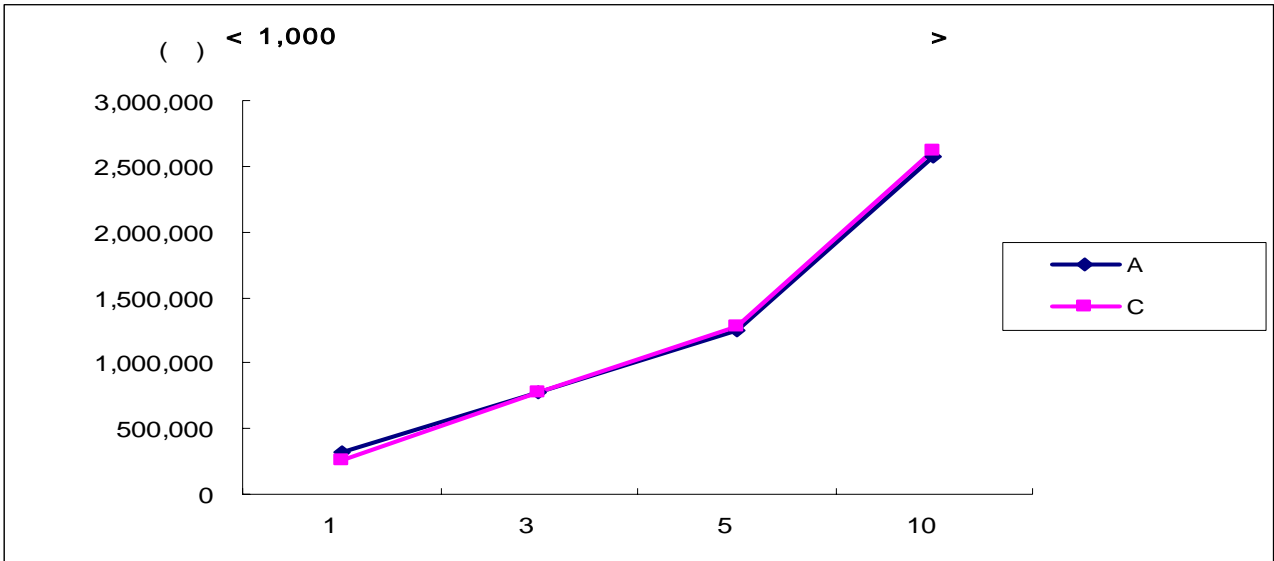
※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집합투자기구에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11.06.01~2012.05.3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11.06.01~2012.05.3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317,908원	771,482원	1,252,201원	2,579,348원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64,810원	782,845원	1,282,416원	2,623,808원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2.05.31)	(2011.05.31)	(2010.05.31)
운용자산	7,969,425,570	10,269,148,630	12,337,650,744
증권	7,969,425,570	10,269,148,630	12,337,650,74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583,314	20,432,407	23,761,535
자산총계	7,978,008,884	10,289,581,037	12,361,412,27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8,591,168	74,099,716	87,838,171
부채총계	48,591,168	74,099,716	87,838,171
원본	17,255,917,896	23,310,400,015	22,144,569,146
수익조정금	7,567,859	-52,060,200	-223,860,998
이익잉여금	-9,334,068,039	-13,042,858,494	-9,647,134,040
자본총계	7,929,417,716	10,215,481,321	12,273,574,108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1.06.01 - 2012.05.31)	(2010.06.01 - 2011.05.31)	(2009.06.01 - 2010.05.31)
운용수익	528,614,184	-2,422,925,851	1,658,121,932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28,614,184	-2,422,925,851	1,658,121,932
기타수익	0	0	13,938,743
운용비용	167,680,214	227,325,019	279,225,033
관련회사 보수	167,680,214	227,325,019	279,225,03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266,930	1,940,671	2,710,447
당기순이익	359,667,040	-2,652,191,541	1,390,125,195
매매회전율	0.00	0	0

주) 매매회전율: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함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2.05.31)	(2011.05.31)	(2010.05.31)
운용자산	255,383,854	916,941,979	3,899,940,307
증권	255,383,854	916,941,979	3,899,940,30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2,224,957	4,941,397
자산총계	255,383,854	919,166,936	3,904,881,70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67,304	7,150,382	31,700,132
부채총계	1,167,304	7,150,382	31,700,132
원본	567,841,960	2,126,489,059	7,108,100,047
수익조정금	25,805,066	221,446,497	90,946,624
이익잉여금	-339,430,476	-1,435,919,002	-3,325,865,099
자본총계	254,216,550	912,016,554	3,873,181,572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1.06.01 - 2012.05.31)	(2010.06.01 - 2011.05.31)	(2009.06.01 - 2010.05.31)
운용수익	428,119	-403,522,044	349,532,158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28,119	-403,522,044	349,532,158
기타수익	0	150,896	51,400,119
운용비용	15,459,854	64,308,989	112,950,007
관련회사 보수	15,459,854	64,308,989	112,950,00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4,969	467,072	741,579
당기순이익	-15,126,704	-468,147,209	287,240,691
매매회전율	0.00	0	0

주) 매매회전율: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함

나. 대차대조표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5 (2012.05.31)		4 (2011.05.31)		3 (2010.05.31)	
1.			0		0		0
2.							
3.			0		0		0
1.							
2.							
3.							
4.			7,969,425,570		10,269,148,630		12,337,650,744
가							
1.							
2.		7,969,425,570		10,269,148,630		12,337,650,744	
3.							
4.	가						
1.			0		0		0
2.							
3.			0		0		0
4.							
1.			0		0		0
2.							
1.							
2.			8,583,314		20,432,407		23,761,535
3.							
4.							
5.		8,583,314		20,432,407		23,761,535	
6.							
7.							
			7,978,008,884		10,289,581,037		12,361,412,279
1.			0		0		0
2.							
1.							
2.			48,591,168		74,099,716		87,838,171
3.		8,541,047		20,325,104		23,642,041	
4.		40,050,121		53,774,612		64,196,130	
5.							
6.							
			48,591,168		74,099,716		87,838,171
1.		17,255,917,896		23,310,400,015		22,144,569,146	
2.							
3.		-9,326,500,180		-13,094,918,694		-9,870,995,038	
(: 17,255,917,896						
	: 23,310,400,015						
	: 22,144,569,146						
(가	: 459.52						
	: 438.24						
	: 554.25						
			7,929,417,716		10,215,481,321		12,273,574,108
			7,978,008,884		10,289,581,037		12,361,412,279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5 (2012.05.31)		4 (2011.05.31)		3 (2010.05.31)	
1.			0		0		0
2.							
3.			0		0		0
1.							
2.							
3.							
4.			255,383,854		916,941,979		3,899,940,307
가							
1.		255,383,854		916,941,979		3,899,940,307	
2.			0		0		0
3.			0		0		0
4.							
1.			0		0		0
2.							
3.							
4.			0		0		0
1.							
2.					2,224,957		4,941,397
가							
1.				2,224,957		4,941,397	
2.							
3.							
4.							
5.							
6.							
7.							
			255,383,854		919,166,936		3,904,881,704
1.			0		0		0
2.							
가			1,167,304		7,150,382		31,700,132
1.							
2.							
3.				2,212,914		4,908,356	
4.		1,167,304		4,937,468		26,791,776	
5.							
6.							
			1,167,304		7,150,382		31,700,132
1.		567,841,960		2,126,489,059		7,108,100,047	
2.							
3.		-313,625,410		-1,214,472,505		-3,234,918,475	
(: 567,841,960						
	: 2,126,489,059						
	: 7,108,100,047						
(가 : 447.69						
	: 428.88						
	: 544.90						
			254,216,550		912,016,554		3,873,181,572
			255,383,854		919,166,936		3,904,881,704

다. 손익계산서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5 (2011.06.01-2012.05.31)		4 (2010.06.01-2011.05.31)		3 (2009.06.01-2010.05.31)	
1.		0		0		13,938,743
1.1.						
2.					13,938,743	
3.						
4.						
2. 가		572,922,145		209,704		2,288,104,061
2.1.						
2.2. / 가						
2.3. / 가						
2.4. 가	0		0		0	
2.5. / 가						
2.6. / 가						
2.7.	572,922,145		209,704		2,288,104,061	
3. 가		44,307,961		2,423,135,555		629,982,129
3.1.						
3.2. / 가						
3.3. / 가						
3.4. 가	0		0		0	
3.5. / 가						
3.6.						
3.7.	44,307,961		2,423,135,555		629,982,129	
3.8.		168,947,144		229,265,690		281,935,480
1.1.	74,125,647		100,492,565		123,435,760	
1.2.	88,486,291		119,961,310		147,349,369	
1.3.	5,068,276		6,871,144		8,439,904	
1.4.						
1.5.						
1.6.	1,266,930		1,940,671		2,710,447	
()		359,667,040		-2,652,191,541		1,390,125,195
()		0.020843113		-0.113777178		0.062774994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원)

	5 (2011.06.01-2012.05.31)		4 (2010.06.01-2011.05.31)		3 (2009.06.01-2010.05.31)	
1.		0		150,896		51,400,119
1.1.						
2.				150,896		51,400,119
3.						
4.						
2. 가		31,593,315		113,295		551,300,261
2.1.						
2.2. / 가						
2.3. / 가						
2.4. 가	0		0		0	
2.5. / 가						
2.6. / 가						
2.7.	31,593,315		113,295		551,300,261	
3. 가		31,165,196		403,635,339		201,768,103
3.1.						
3.2. / 가						
3.3. / 가						
3.4. 가	0		0		0	
3.5. / 가						
3.6.						
3.7.	31,165,196		403,635,339		201,768,103	
3.8.		15,554,823		64,776,061		113,691,586
1.1.	5,565,511		23,151,200		33,710,566	
1.2.	9,513,955		39,574,967		76,934,600	
1.3.	380,388		1,582,822		2,304,841	
1.4.						
1.5.						
1.6.	94,969		467,072		741,579	
()		-15,126,704		-468,147,209		287,240,691
()		-0.026638933		-0.220150302		0.04041033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6.01 - 2012.05.31	233	105	8	4	69	30	173	79
2010.06.01 - 2011.05.31	221	124	86	43	75	37	233	102
2009.06.01 - 2010.05.31	252	130	37	22	68	40	221	123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6.01 - 2012.05.31	21	9	14	6	30	13	6	3
2010.06.01 - 2011.05.31	71	39	46	23	96	48	21	9
2009.06.01 - 2010.05.31	61	31	36	21	26	15	71	39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준일: 2012년 06월 01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86%	-8.95%	-2.88%	-14.40%	-14.40%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38%	-9.34%	-3.0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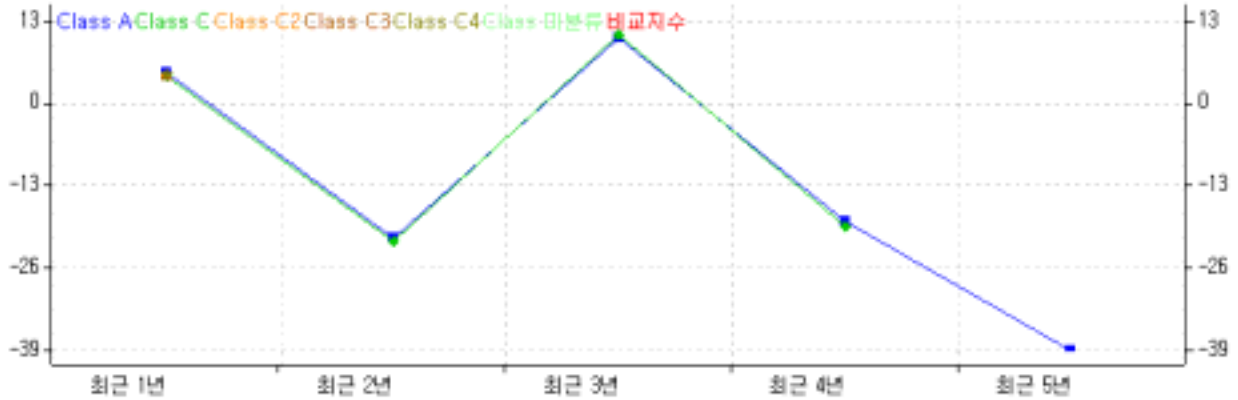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준일: 2012년 06월 01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86%	-20.93%	10.50%	-18.34%	-38.58%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38%	-21.29%	10.82%	-19.12%	-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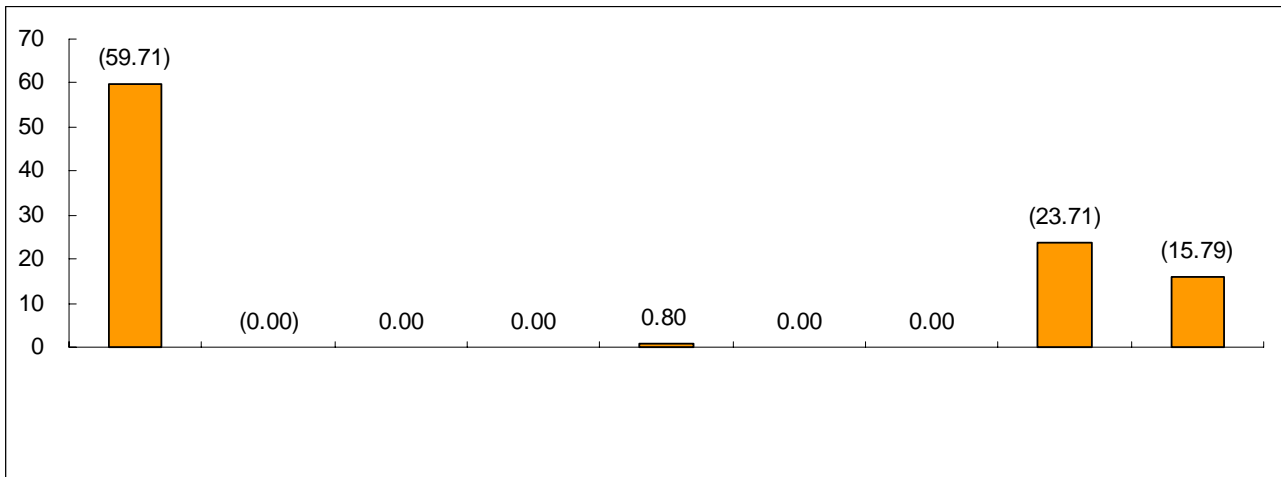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12년 06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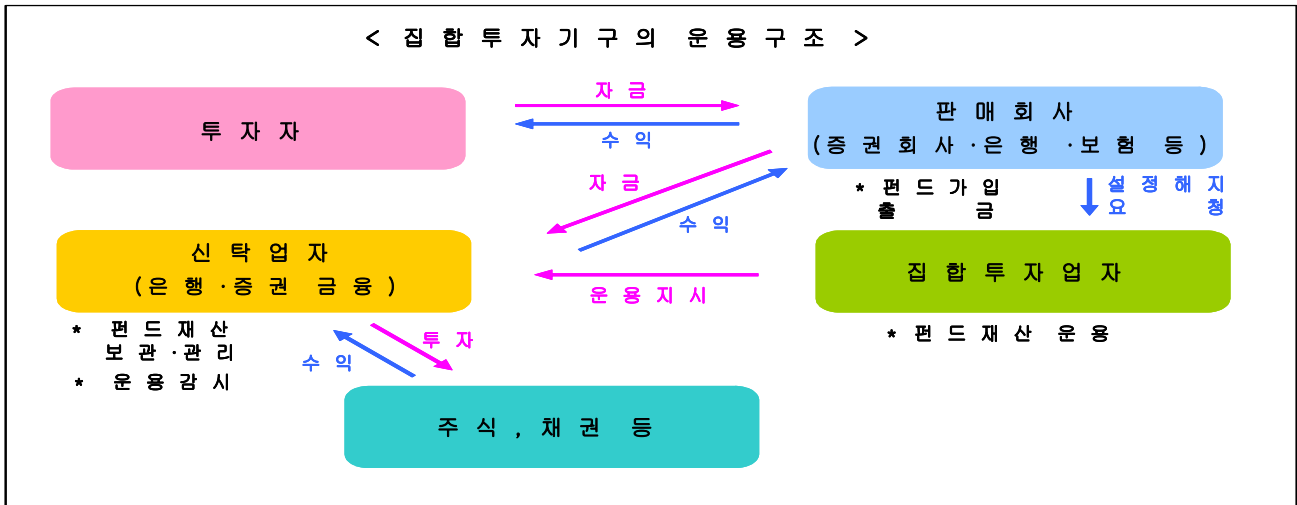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2	0	0	0	0	10	23	35
	(0.00)	(0.00)	(0.00)	(0.00)	(5.88)	(0.00)	(0.00)	(0.00)	(0.00)	(29.66)	(64.46)	(24.00)
SGD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VND	85	0	0	0	0	0	0	0	0	9	0	94
	(90.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60)	(0.00)	(66.00)
USD	0	0	0	0	0	-1	0	0	0	14	0	13
	(0.00)	(0.00)	(0.00)	(0.00)	(0.00)	(-7.15)	(0.00)	(0.00)	(0.00)	(107.15)	(0.00)	(9.00)
합계	85	0	0	0	2	-1	0	0	0	34	23	143
	(59.71)	(0.00)	(0.00)	(0.00)	(1.44)	(-0.64)	(0.00)	(0.00)	(0.00)	(23.71)	(15.79)	(100.00)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 어음에는 CD를 포함함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빌딩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7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주)KB금융지주 100%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 2) 투자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제24기	제23기
기 간	2012.03.31	2011.03.31
자산총계	163,155,867	153,352,435
현금 및 예치금	61,713,252	86,413,083
유가증권	62,655,090	43,025,602
대출채권	2,127,000	2,062,141
유형자산	189,831	210,849
기타자산	36,470,693	21,640,759
부채총계	61,726,424	29,129,754
예수부채	1,778,084	1,729,227
기타부채	59,948,340	27,400,526
자본총계	101,429,442	124,222,681
자본금	38,337,750	38,337,750
이익잉여금	62,076,268	85,155,77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5,424	729,156
부채와 자본총계	163,155,867	153,352,435

(2)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제24기	제23기
기 간	2011.04.01~2012.03.31	2010.04.01~2011.03.31
영업수익	86,318,025	73,131,774
영업비용	30,370,914	30,612,775
영업이익	55,947,111	42,518,999
영업외수익	9,329	8,394
영업외비용	46,726,278	14,447,086

경상이익	9,230,162	28,080,307
법인세 등	2,008,028	6,802,361
순이익	7,222,134	21,277,946

라. 운용자산 규모

(2013년 02월 13일 현재,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70,405	13,257	27,729	13,065	5,232	15,425	30,410	0	72,842	248,36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및 위탁 내용]

구 분	내 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해외위탁집합업자의 개요]

구 분	내 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
회사 주소	60B Orchard Road #06-18 Tower 2, The Atrium@Orchard, Singapore 238891 전화번호: 65-6828-6828 홈페이지: www.fullertonfund.com
회사 개황	주요 주주: 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100% 최초 설립일: 2003-12-11 총수탁고: 약 99억 SG달러 (2012-03-31 기준)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전화번호	☎ 1588-1770
인터넷 홈페이지	www.kr.hsbc.com

나. 주요 업무

-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투자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한국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두며,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투자자총회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변경(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집합투자기구 해지 결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투자자총회의 집합투자기구 해지 결의
- (3)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0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투자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 회사의 선정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p>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등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의 투자를 하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 60%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증권의 운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집합투자재산을 주로 단기성 자산(콜론, CP, CD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정해진 비율 없이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로 사모펀드에서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